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해체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물 해체 작업용 기계·기구, 안전보건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·기구 및 물질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브레이커"라 함은 압축공기 또는 유압에 의한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.
- (나) "강구"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 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(다) "화약류"란 화약, 폭약 및 화공품으로,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총포화약법」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.
- (라) "팽창제"라 함은 광물의 수화반응에 의한 팽창압을 이용하여 구조체 등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.
- (마) "절단톱"이라 함은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, 경화하여 제조된 것으로 기둥, 보, 바닥,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는 기구를 말한다.